

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

- 일 사 : 2019년 12월 13일(금) 19시00분
- 장 소 : 샛별로 송도점
- 참석 이사 : 대표이사 윤 , 이사 신 , 이사 안 , 이사 최 , 이사 심
이사 김 (총8명/참석 6명)

- 안 건 : 제1호의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
제2호의안 2020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 및 사업계획(안) 심의

- 윤 대표이사 : 성원확인 후 이사 8인 중 6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관 제28조제 1항에 의거하여 2019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.
(의사봉3타)

- 윤 대표이사 : 2019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함에 앞서 늘 법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시고, 특히 연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.

□ 안건상정 및 심의사항

- 윤 대표이사 : 제4차 임시이사회 제1호의안으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상정하다. (의사봉 3타)
 - 윤 대표이사 : 제1호 의안에 대해 간사를 통해 의결주문 및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
 - 장 진행간사 : 이사회 자료 3쪽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9조, 제10조 및 법인정관 제26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고, 자료에 따라 제안사유 및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다.
-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해 법인 및 각 시설별 자료를 토대로 법인, 밝은마음, 주안해피타운, 주안노인복지센터, 강화실버빌 순으로 보고하다.

- 안 이사 : 법인 추경에 반영된 잠수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.
- 윤 대표이사 : 당초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분여재산액이 올 해 지급예정이었으나 연기됨으로 인해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답하다.
- 김 이사 : 밝은마음과 동심원에서 시설의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유에 대해 묻다.
- 윤 대표이사 : 최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현 시설보다 소규모이거나 더 나은 환경으로 전원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답하다.
- 김 이사 : 주안해피타운 추경예산 설명에 있어 시간외 수당을 몇 시간 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.
- 장 진행간사 : 노인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기관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, 국고보조 시설의 경우 직접서비스 인력은 40시간, 간접서비스 인력은 20시간을 인정하여 보조해주고 있음을 답하다.
- 안 이사 : 주안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입소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묻다.
- 박 원장 :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현재는 신고제로 하다 보니 진입시설이 너무 많아 경쟁이 불가피하며,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변경되어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하다.
- 안 이사 : 강화실버빌의 경우 어르신 인원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인력이 함께 늘어나야 하므로 수익 면에서 어떤지에 대해 묻다.
- 최 이사 : 인원증원에 따른 수익구조가 49인일 때 등 단위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묻다.
- 이 원장 :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9인일 경우, 49인일 경우 등 채용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어 수익구조가 변하게 되며, 강화실버빌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인력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인원 증원에 따른 인력채용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임을 답하다.
- 신 이사 : 2차 추경예산의 경우 타당하게 편성되었고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로 적절함을 이야기 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에 동의하다.
- 김 이사 : 동의하다.
- 심 이사 : 재청하다.
- 윤 대표이사 :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, 이견이 없음을 확인 후 법인 및 산하

시설의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정관 제 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(의사봉3타)

○ 윤 대표이사 : 제2호의안으로 법인 및 산하시설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예산(안)을 상정하다. (의사봉 3타)

○ 윤 대표이사 : 제2호 의안에 대해 간사를 통해 의결주문 및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
○ 장 진행간사 : 이사회 자료 65쪽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및 법인정관 제26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20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세입·세출예산(안)에 대한 의결을 주문하고, 자료에 따라 제안사유 및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다.

-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예산(안)에 대해 법인 및 각 시설별 이사회 자료를 토대로 법인, 밝은마음, 주안해피타운, 주안노인복지센터, 강화실버빌 순으로 보고하다.

○ 신 이사 : 법인 전체적으로 예산 증감에 대한 현황에 대해 묻다.

○ 윤 대표이사 : 이사회 자료 66쪽 2020년 예산개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, 약 7억여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하다.

○ 신 이사 : 가능하면 현실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,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을 통해 각 시설에 도움 되도록 이사들이 노력할 것을 이야기 하다.

○ 안 이사 : 각 시설별 예산에 있어 후원금 수입의 경우 실현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여 예산수립과 실제 상황이 근접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을 당부하다.

○ 신 이사 : 시군구에서의 각 시설별 점검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완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다.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성과 신뢰성이 인정됨을 이야기 하고 향후 업무수행 시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2호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할 것에 동의하다.

○ 심 이사 : 재청하다.



○ 윤 대표이사 :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, 이견이 없음을 확인 후 법인 및 산하시설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정관 제 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(의사봉3타)

○ 윤 대표이사 : 바쁘신 가운데도 이사회에 참석해주심에 재차 감사를 표하고, 기타 안건이 없는지 묻고 안건이 없자 폐회에 대해 동의를 구하다.

○ 최 이사 : 폐회에 동의하다.

○ 심 이사 : 재청하다.

○ 윤 대표이사 : 폐회 동의재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 제4차 임시이사회회의를 마치고, 20시05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(의사봉3타)

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날인하다.

2019. 12. 13.

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

대표이사 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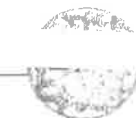
이 사 신



이 사 안



이 사 최



이 사 심



이 사 김

